

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9.29.(목) 조간 2022.9.28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9.28.(수)		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	책임자	과장	박종균	(044-202-3310)
		담당자	서기관	최기전	(044-202-3301)

「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」 발간

- 장애인학대 신고 총 4,957건, 학대 피해자의 74.1%는 발달장애인 -

□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「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」를 발간하였다.

○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에 따라, 2017년부터 전국*에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·접수 및 피해자 지원,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,

* '22년 9월 현재 중앙 1개소, 17개 시·도에 18개소(경기 2개소) 설치 운영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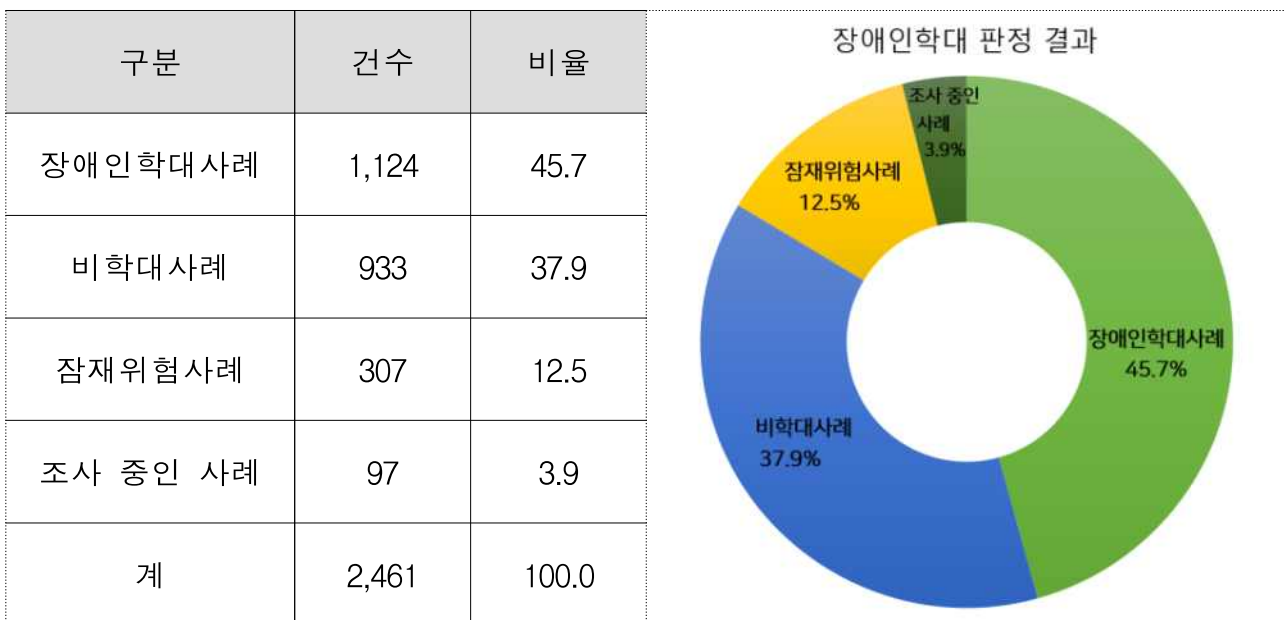
○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.

□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·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4,957건이며, 이중 학대사례는 1,124건
-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.7%, 지체장애인 6.0% 순
 -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(74.1%)은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장애)
-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.9%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.2%, 부(父) 11.9% 순
- 학대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.1%, 장애인거주시설 12.7%, 행위자 거주지 9.5% 순
-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.4%, 경제적 착취 24.9%, 중복 학대 20.8% 순
-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.8%(166건)를 차지
- 노동력 착취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0.1%(114건)를 차지

-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, 4,957건으로 전년 대비 17.8% 증가하였고,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,461건(49.6%)으로 전년 대비 18.9% 증가하였다.
-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, 의심사례 중 학대 1,124건(45.7%), 비학대 933건(37.9%), 잠재위험 307건(12.5%), 조사 중 97건(3.9%)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.
-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,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·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<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결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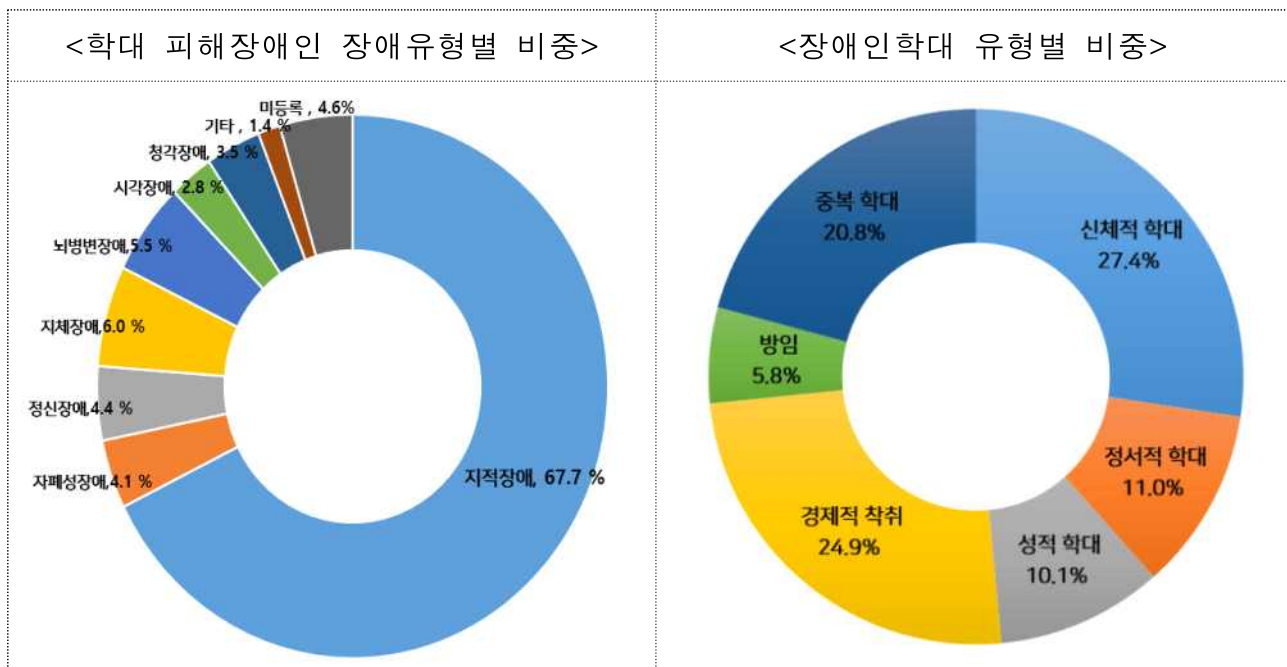


- 장애인학대사례: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
- 비학대사례: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
- 잠재위험사례: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
- 조사 중인 사례: 학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

○ 한편, 장애 유형별로 보면,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*의 비율이 74.1%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*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(807건)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(26건)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, 아래 ‘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’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

○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,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. 중복 학대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착취, 유기, 방임 등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.



○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,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.1%(114건)이었으며, 피해자의 77.2%(88건)는 지적장애인이었다.

○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.8%(166건)이었으며, 행위자는 부(父)·모(母)가 43.4%(72건)로 가장 높았다.

-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, 부·모·배우자·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(36.2%)으로 전년 331건(32.8%) 대비 23.0% 증가하였다.
 - 구체적으로는, 지인이 20.9%(235건)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.2%, 부(父) 11.9% 순이었다.
-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.1%(462건)로 가장 많았고, 장애인거주시설 12.7%(143건), 학대행위자 거주지 9.5%(107건) 순이었다.
 -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.3% 증가한 반면,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.
 -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*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.
 - *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장애인활동지원인, 119구급대원, 보육교직원, 초·중·등교육법 상 교원 등

<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>

(단위: 건, %)

구분		피해장애인 거주지	장애인 거주시설	학대행위자 거주지	직장	기타
학대 사례	건수	462	143	107	58	354
	비율	41.1	12.7	9.5	5.2	31.5

-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,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,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.3%(771건),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.7%(1,690건)로 나타났다.

< 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>

(단위: 건, %)

신고의무자		비신고의무자		계	
신고건수	비율	신고건수	비율	신고건수	비율
771	31.3	1,690	68.7	2,461	100.0

-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(14.6%)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(7.9%)이었다.
-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(13.2%)으로 가장 많았고,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6건(12.8%), 가족 및 친인척이 300건(12.2%) 순이었다.
-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(274건) 대비 18.6% 증가하였으며,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.

* 신고의무자: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,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
** 비신고의무자: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(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체 종사자,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)

□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*을 통해, 가정, 학교,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.

*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개정('21.7.27)을 통해,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,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, 초·중·고교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

○ 또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·배포하여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,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(APO)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
2. 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

<별첨>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균 (044-202-3310)
		담당자	서기관	최기전 (044-202-3301)
담당 부서 <수행기관>	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	책임자	관 장	은종균 (02-6951-1791)
		담당자	팀 장	이미현 (02-6951-1793)

붙임 1

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

□ 주요기능

- (중앙기관) 지역기관 운영 지원,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·실태조사,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, 홍보, 전문인력 양성 등
- (지역기관)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피해장애인 사후관리,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
□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

-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: 1644-8295(전국 공통)

연 번	기관명	대표메일	전화·팩스	주소
1	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	naapd8295@naapd.or.kr	T) 02-6951-1790 F) 02-6951-1799	(07205)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 코 오롱디지털타워 1412호(양평동)
2	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	seoul16448295@gmail.com	T) 02-3453-9527 F) 02-3453-9528	(06278)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, 서울시립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 6층(대치동)
3	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	bsaapd8295@bsaapd.or.kr	T) 051-715-8295 F) 051-715-8297	(47511)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, 금복빌딩 6층(거제동)
4	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	daapd@daapd.or.kr	T) 053-716-8295 F) 053-716-8290	(41242)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, 서한코보스카운 티 403호(신천동)
5	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	icaapd@hanmail.net	T) 032-425-0900 F) 032-425-0990	(22134)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, 르네상스빌딩 18층(주안동)
6	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	gaapd2017@hanmail.net	T) 062-716-1633 F) 062-716-1638	(61960)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, 나라빌딩 2층 (치평동)
7	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	djaapd@hanmail.net	T) 042-631-5667 F) 042-637-5669	(34541) 대전 동구 계족로 499, 루루빌딩 3층(용 전동)
8	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	uaapd8295@uaapd.or.kr	T) 052-260-8295 F) 052-260-8297	(44669) 울산 남구 중앙로 311, 연세H타워 2층(신 정동)
9	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	sj-ongho@naver.com	T) 044-905-8295 F) 044-905-8298	(30150) 세종 한누리대로2107,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(보람동)
10	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(경기청 관할 21개 시)	ggaapd@hanmail.net	T) 031-287-1134 F) 031-293-2388	(16639)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, 경기 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(오목천동)
11	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(경기북부청 관할 10개 시)	ggndrc@gmail.com	T) 031-851-1007 F) 031-851-1008	(11813)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, 성산 타워 301호(민락동)
12	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	gwaapd@naver.com	T) 033-264-8296 F) 033-264-8297	(24390)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, 경림빌딩 2층 (석사동)
13	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	cb2878295@hanmail.net	T) 043-287-8295 F) 043-287-8296	(2879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-54, 라데팡스타워 303호(분평동)
14	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	cn8295@naver.com	T) 041-551-8295 F) 041-551-8297	(31106)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, 천안법 조플라자 301호(청당동)
15	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	jbaapd@hanmail.net	T) 063-227-8295 F) 063-227-8290	(54963)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-10, 경 희궁빌딩 5층(효자동2가)
16	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	2858298@drj.or.kr	T) 061-285-8298 F) 061-800-8889	(58615) 전남 목포시 영산로633, 세븐에이치타워 2층(석현동)
17	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	gb231007@hanmail.net	T) 054-282-8295 F) 054-282-8296	(37662)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-5(대잠동)
18	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	gnaapd@gnaapd.or.kr	T) 055-603-8295 F) 055-608-6295	(51515)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, 리제스 타워 210호(중앙동)
19	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	jaapd@jaapd.or.kr	T) 064-900-9695 F) 064-900-9795	(63217) 제주 제주시 청굴로5길 21, 1층(이도2동)

붙임 2

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

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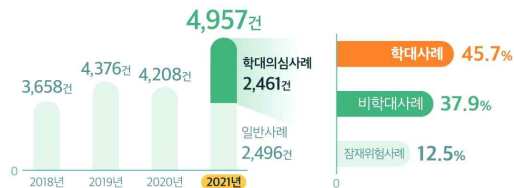


보건복지부



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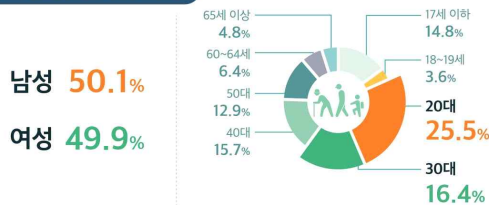
신고접수 및 판정



학대발생장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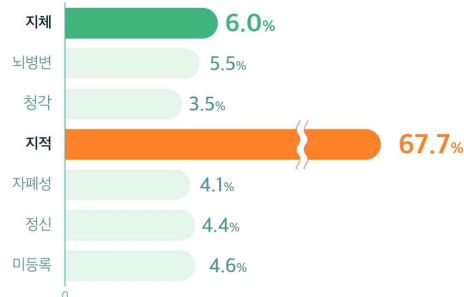
피해자 성별 및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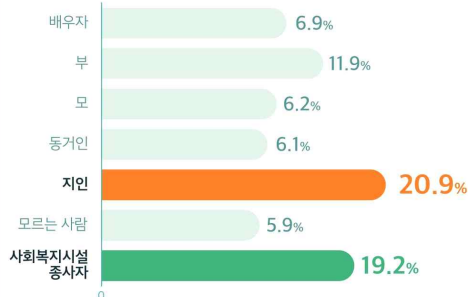
장애인학대 유형



피해자 장애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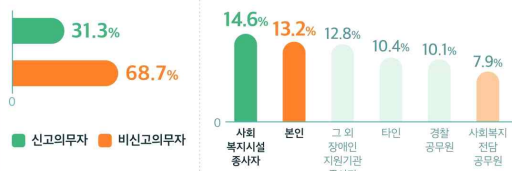
주요 학대행위자



상담 및 지원



신고자 유형



특성별 장애인학대



발달장애*

전체 학대사례 중 74.1%
본인 신고율 7.3%
*지적·자폐성장애



장애아동

전체 학대사례 중 14.8%
주 행위자 부모 43.4%



노동력착취

전체 학대사례 중 10.1%
장기 학대(5년 이상 지속) 46.5%